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권영세·이인선·주호영

김정재 · 곽규택 · 임이자

안철수 · 김형동 · 조승환
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의장에게 신고하고,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있어,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

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9조의3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3(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신고) ① 의원이 임기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 -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신고한 직을 가질 수 없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결과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 해당 직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④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 -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

신고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⑥ 제4항에 따른 신고 결과 영리업무가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 해당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9조의3(겸직 및 영리업무 종
	사에 대한 사전 신고) ① 의원
	이 임기 중에 제29조제1항 각
	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에는
	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절
	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 및
	제5항을 준용한다.
	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
	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
	전에는 신고한 직을 가질 수
	없다.
	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결과 제
	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
	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
	기 중에 해당 직을 가지게 된
	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
	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
	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	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
	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
	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	④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단

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 으로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 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 다.

-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 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신고한 영리업무에 종 사할 수 없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신고 결과 영리업무가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해당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.